

#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보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주식] 집합투자기구
- 다. 보관 • 관리기간:  
2012.04.25 - 2012.12.31
-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  
케이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TB투자증권

##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2.06. 29	제12조 (투자신탁회계기간)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2년 4월 24일 경과후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기간으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2012년 4월 24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간 : 2012년 4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2012.06. 29	제39조	①생략	①생략

(투자신탁자산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자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4. 생략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11 생략 추가	②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자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4. 생략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11 생략 12.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2012.06. 29	제41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사유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2012.06. 29	말소	김남기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성자산운용 신탁회계팀 - 채권 2팀 - 채권 1팀 - ETF 운용팀	2109001159
2012.06. 29	신규	김남의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학사 -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1팀	2110000109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안진회계법인	1년	55만원	서면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